

KRILA Focus
2012. 03



2012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용과 평가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Summary

2012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본연의 목적인 광역화, 효율화, 자율화를 기저로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광역연계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추진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함으로써 투자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와 지역발전 노력 및 성과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포괄보조금 예산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광특회계 내 사업조정 및 지속적인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울러 광특회계 사업평가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평가지표 개선 등의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숙지, 지역에 부합된 사업 발굴, 합리적 추진체계 구축, 사업 전 과정의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

-
- I.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정책적 목표와 의의 _ p2
 - II.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의 구조 분석과 운용 실태 _ p3
 - III.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의 개선 과제 _ p6
 - IV. 광특회계 사업 평가와 개선 _ p8

KRILA Focus 제45호 (2012. 03)

내용문의 지방재정연구실 신두섭 수석연구원
02-3488-7371 / sds@krila.re.kr
지역발전위원회 김성훈 전문관
02-2180-2205 / intruth@keit.re.kr

배포문의 발간 담당자(3488-7372)

본 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2012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용과 평가

신두섭 (수석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관, 지역발전위원회)

김성훈 (전문관, 지역발전위원회)

2012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과 평가

I.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정책적 목표와 의의

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가. 특별회계의 목표와 전략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본연의 법적 목적인 ‘광역화, 효율화, 자율화’를 기저로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둠
- 이 특별회계는 특히 기초생활권 개발, 광역경제권 추진, 초광역권 개발 등 3가지 추진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마을 단위 대상, 기본적 삶의 질 보장과 함께 광역경제권(5+2) 설정, 그리고 대외개방형 국토개발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세부 전략을 설정하고 있음

나. 특별회계의 정책방향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¹⁾의 정책 방향은 ① 광역연계를 통한 규모의 경제 추진, ②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③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 확대, ④ 지역발전 노력 및 성과에 상응한 인센티브 강화, 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책임성 강화 등임

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체계

- 개편 당시(2008년 기준), 광특회계의 재원은 7.6조원에서 8.2조원으로, 2012년에는 9.4조원까지 확대되었고 사업 내용도 대폭적으로 보완함
- 기존의 3개 계정의 틀은 그대로 유지, 단 중전의 지역혁신사업계정을 광역발전계정으로 개편, 지역개발사업계정은 시·군 단위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계정으로 전환하고, 포괄보조금으로 대폭 정비함

1) 이하 부분적으로 ‘광특회계’로 표기함

- 광역발전계정은 선도산업 육성, 인재양성 등 광역경제권의 핵심사업을 포함하여 시·도간 연계사업,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국가사업, 지역발전 계획과 시·도의 사업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지역개발계정은 시·군 단위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포괄보조금 체계로 대폭 정비하였음

II.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의 구조 분석과 운용 실태

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기본 구조와 특징

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사업 구분 : 3개 계정 6개 사업군

- 우선, 지역개발계정의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경우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됨

[표 1] 광특회계 기본체계

구분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	기타 사업	
중점목표	지역개발지원	낙후지역개발	국가정책목표	지역혁신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징 ■ 배분단위 ■ 편성주체 ■ 재원배분 	자율 광역단체(시·도) 자치단체 모델적용(총액배분)	균형 기초단체(시·군) 자치단체 내역편성(총액배분)	정책목표 사업단위 중앙부처 내역편성	경쟁 사업단위 중앙부처 내역편성
주요사업 예시	지역SOC, 관광자원개발 등	도시, 오지, 접경 농산어촌개발 등	재해예방 및 GB 관리 관련사업	4·9지역산업진흥, NURI사업 등
			타회계 이관	
구분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시·도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중점목표	광역적 지역개발 및 기초생활권 특화발전		광역경제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징 ■ 배분단위 ■ 편성주체 ■ 재원배분 	자율 광역단체(시·도) 자치단체 모델적용(총액배분)	자율 기초단체(시·군·구) 자치단체 모델적용(총액배분)	상생발전, 규모화 사업단위 중앙부처 내역편성	
주요사업	지역SOC, 관광자원개발, 향토·지연산업 발전 등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	선도산업, 인재양성, 광역권 연계/협력 등	

- 지역개발계정의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성장촉진지역 등 기초생활권 관련 기반구축사업으로, 해당 시·군·구가 지출한도(계속소요)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됨. 단, 신규소요는 부처가 직접 편성함

- 광역발전계정의 부처 직접편성사업은 광역경제권 지원을 위한 시·도간 연계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국가적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각 부처가 지역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요구 등을 받아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함
-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자율편성사업은 제주계정 대상사업 중 부처직접편성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군별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하게 됨
-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부처직접편성사업의 예산신청 및 편성절차는 광역발전계정의 부처직접편성사업과 동일함

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실태와 성과

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원 확충

- 2000년대 후반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악화 일로에서도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우선 광특회계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2010년부터 소폭 감소하였음
 - 광역발전특별회계 지출규모는 광특회계 개편(2009년) 이후 오히려 소폭 감소(2009년 : 9.4조원 → 2012년 : 9.4조원, 연평균 증가율 -0.012%)
- 광특회계 개편 전의 예산 증가(2005년: 5.3조원 → 2008년: 7.8조원, 연평균 증가율 13.7%)와 비교하여 저조한 실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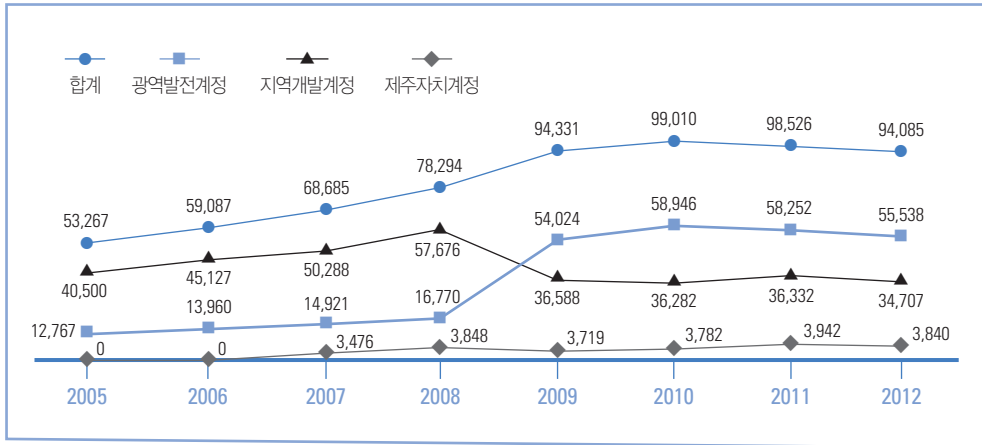
[표 2] 광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추이(2005~2012)

[단위: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¹⁾	2010	2011	2012
합계	53,267	59,087	68,685	78,294	94,331	99,010	98,526	94,085
광역발전계정	12,767	13,960	14,921	16,770	54,024	58,946	58,252	55,538
지역개발계정	40,500	45,127	50,288	57,676	36,588	36,282	36,332	34,707
제주자치계정	-	-	3,476	3,848	3,719	3,782	3,942	3,840

* 주: 광특회계 계정, 일반회계 등 국고보조사업간 사업이관 반영

[그림 1] 광특회계 예산추이



나. 유사 및 중복 사업에 대한 통합과 함께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

-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인데, 이를 도입하기 위해 우선 마을, 읍·면 단위 개발사업 중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 과감하게 통합하였는데, 이들 사업은 주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종합개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공간별, 사업별 중복 지원이 만연하였으나 성과 창출은 부진한 상황이었음
 - 이들 사업의 통합으로 200여개의 유사 중복 지역개발 사업을 24개 사업군으로, 그리고 24개 사업군을 다시 22개 사업군으로 통·폐합하여 포괄보조금의 기본 체계를 구축하였음
 - 포괄보조 22개 사업군은 18개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4개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으로 구성됨
 - 포괄보조금 제도는 자치단체별로 세출한도액을 부여하며, 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에서 각 사업군에 포함된 내역사업을 선택하게 됨. 22개 사업군에 포함된 내역사업에 한정하여 포괄보조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며, 포괄보조금은 운용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자치단체는 사업메뉴 선택권만 부여하고 재정당국이 승인권을 보유하는 제한적인 자율성을 부여하게 됨

- 포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포괄보조사업별 보조율이 적용됨
 - 다만,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성장촉진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신청 한도 내에서 보조율 10%p 상향 조정이 가능함

III.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의 개선 과제

1. 포괄보조금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 포괄보조금(지역개발계정의 2010년도~2012년도)의 예산 규모는 광특회계 전체 예산의 37% 수준으로 예산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표 3] 광역발전특별회계 예산 구성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합계	99,010(100)	98,526(100)	94,085(100)
광역발전계정	58,946(59.5)	58,252(59.1)	55,538(59.0)
지역개발계정	36,282(36.7)	36,332(36.9)	34,707(36.9)
제주자치계정	3,782(3.8)	3,942(4.0)	3,840(4.1)

- 포괄보조금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광특회계 규모의 확대와 함께 지역개발계정(포괄보조금 사업)의 예산 규모의 확대가 필요함

2. 지역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포괄보조금 보조율 제도 마련이 요구됨

- 현재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보조율이 지역의 재정여건 고려 없이 사업별(30~100%)로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조율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지방의 재정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음²⁾
- 지역산업육성 관련사업(지식경제부) 간 통합을 조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동일 부처 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비R&D)’,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지방자치단체 보조)’,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간 세부 사업내용을 조정하여야 함

2) 예를 들면, 재정능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범위 내에서 보조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뿐 아니라 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광특회계 내 사업 조정이 필요함

- 투자재원이 대규모로 소요되는 사업을 시·도 자율편성에서 광역계정으로 전환하는 등 계정간 사업 조정을 통해 지역의 재정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임
- 특히, 기존의 포괄보조금 체계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마을, 읍·면 단위사업의 통폐합이 있었는데, 이 사업들과 광역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사업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한 통폐합으로 사업 운용의 효율성을 꾀할 필요가 있음

- 광특회계 포괄보조금 사업과 타 회계, 광특회계 내 유사·중복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통·폐합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 또한, 부처별 평가 결과 공유 및 일관된 평가체계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 포괄보조금은 현행 운영체계를 넘어 소득창출, 고용촉진 지원사업 중심으로 재편 검토가 필요함

5. 포괄보조금 제도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와 함께 부처별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함

- 지방비 부담 즉, 매칭펀드 형식에 의한 구속을 완화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유용성과 자율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사업 추진, 낭비사례 방지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강화 방안 모색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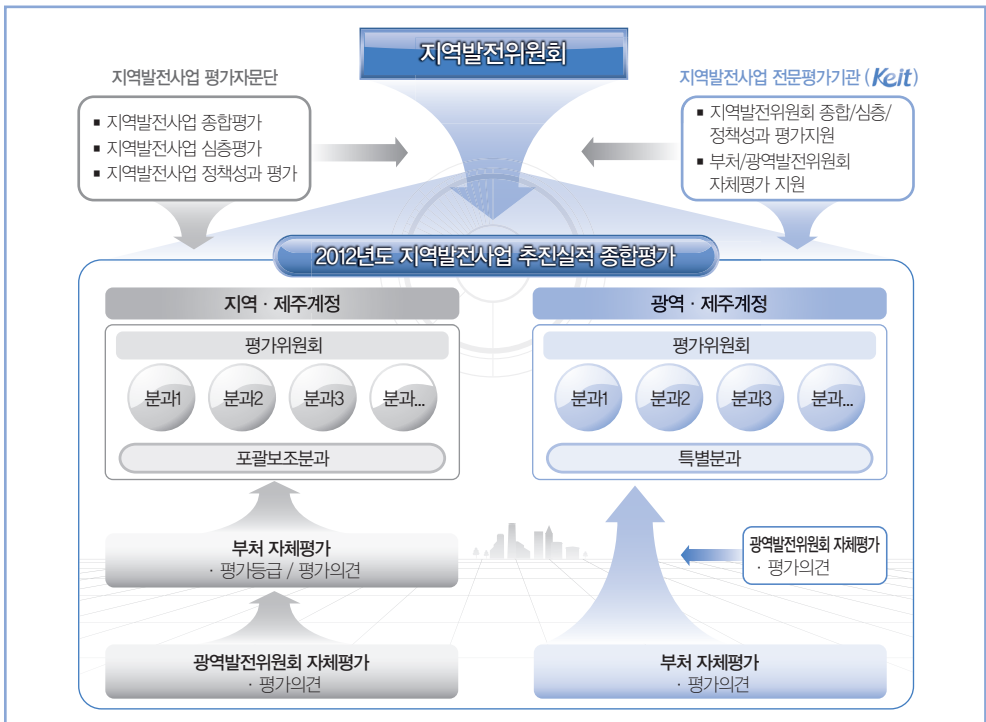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부처별 포괄보조사업 지침을 개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IV. 광특회계 사업 평가와 개선

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평가의 추진근거 및 평가체계

-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의2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
 -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보고를 실시함 (「시행령」 제13조)

[그림 2] 지역발전사업 평가체계



- 지역발전위원회는 평가계획 수립과 평가결과 통보 등 지역발전사업 추진 실적의 종합 평가를 총괄하게 됨
- 중앙행정기관은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함
 - 이 때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광역발전위원회의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게 됨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전년도 광역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처의 장 및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는데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자체평가를 실시함
- 평가위원회는 평가자문단 위원으로 구성하고, 광역발전위원회와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와 평가자료를 토대로 종합평가를 함
 -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해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자문단장을 선임함
- 전문평가기관은 지역발전위원회 종합평가 및 관련 기관의 자체평가를 지원하게 됨

2. 2012년 평가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

-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함
 - 평가결과의 차년도 예산편성에의 반영 등 평가결과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는 예년보다 1개월 빨리 평가결과를 통보(2012. 5월초)해 예산신청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부처의 자율적 사업의 구조 조정을 유도하게 됨
 - 포괄보조금의 종합운영실태 평가를 통해 동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현황, 추진성과, 향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함
 - 광역경제권 단위의 연계·협력 방안 및 지역 단위의 효율적 사업추진방안을 평가하며, 광역경제권 자원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간 연계협력 등 5+2 광역경제권 체계정립, 시·도별 특성화 현황 등을 점검함

-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함

- 평가대상의 선택과 집중으로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사업(공통), 전년도 우수사업(광역계정)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정부 내 주요 평가체계와 중복평가 방지 및 평가결과를 공유하며, 기획재정부(재정사업자율평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연구개발사업평가)와 평가대상, 평가결과 등을 공유하여 중복평가 방지를 도모함

-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함

- 지역발전사업 평가자문단, 전문평가기관을 통한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며, 분야별 전문성,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
- 성과중심의 평가를 강화하며, 성과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광역계정의 경우)하고, 연계협력, 일자리, 삶의 질 등을 성과지표에 반영함

3. 2012년도 평가대상

- 2011년 광특회계로 지원된 부문별 · 광역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평가대상은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으로 지역발전 시행계획에 담긴 모든 사업(일반 및 광특회계, 기금, 지방비, 민자)이나, 중복평가 방지와 평가기간 등을 고려해 광특회계에 한정하고 있음
 - 지역계정, 광역계정 및 제주계정의 3개 계정 사업에 대해 평가하게 됨

[표 4] 2012년도 평가대상*

[단위: 개(억원)]

구분	합계	광역발전계정	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중앙부처편성 (광역계정)	시도/시군구편성 (지역계정)	특행기관 이관사무
광특회계	1,357(98,518)	118(58,252)	1,089(36,327)	18(597)	72(1,474)	60(1,868)
- 평가대상	1,160(89,497)	75(52,405)	999(35,050)	15(573)	71(1,469)	-
- 평가제외**	197(9,021)	43(5,847)	90(1,277)	3(24)	1(5)	60(1,868)

* 2011년도 예산 기준, 광특회계에 배분된 인센티브 예산까지 포함함

** 평가제외: 정책연구 · 관련기관 지원, 특별행정기관 이관사무, 신규사업, 광역계정 중 전년도 'S'등급 사업 등

[표 5] 2011년 및 2012년 평가 대상사업 비교

[단위: 개(억원)]

계정	2011년(2010년 추진 실적)	2012년(2011년 추진 실적)	비고
지역개발	1,508(36,931)	999(35,050)	· 국회 예산안 기준
광역발전	288(56,917)	75(52,405)	
제주특별자치도	시도/시군구 7(1,340) 중앙부처 18(592)	시도/시군구 7(1,469) 중앙부처 15(573)	

- 사업체계는 2011년 광특회계 예산작성지침(2010. 5)의 체계로 편제되어 있음
 - (지역·제주계정) 18+4개 포괄보조사업 → 내역사업*
 - * 시·군·구 자율편성의 내역사업은 ‘기능별 내역사업’으로 통합함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자체 ‘유형별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함
 - (광역·제주계정)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평가단계(기관)별 평가 대상사업은 광역발전위원회, 부처, 지역발전위원회 등 3개 기관별로 구분됨
 - 광역발전위원회 자체평가 대상은,
 - ▶ (지역계정) 해당 권역의 사업
 - ▶ (광역계정) 해당 권역의 광역경제권사업(선도산업, 연계협력, 인재양성)
 - ▶ (제주계정) 지역계정 평가대상 준용
 - 부처 자체평가 대상은,
 - ▶ 부처 소관의 지역계정, 광역계정 및 제주계정 사업
 - 지역발전위원회 종합평가 대상은
 - ▶ 부문별·광역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광특회계로 지원된 지역계정, 광역계정 및 제주계정 사업 등임

[표 6] 평가단계별 평가 내용

구분	광역발전위원회	부처	지역발전위원회
광역·제주계정	평가의견*	평가의견	종합의견/평가등급
지역·제주계정	평가의견	평가의견 등급부여	종합의견/평가등급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연계협력’, ‘인재양성’ 사업에 한정함

- 2012년도 평가 제외사업

- 지역·광역·제주계정 사업 중 2011년도 신규사업(단, 1년 이하의 신규 사업은 평가)은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함
 - ※ 1년차에는 사업의 기본정보만 on-line으로 제출함
- 광역계정 사업 중 전년도 지역발전위원회 종합평가 S등급 사업(단, 평가단위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가)은 평가에서 제외함
 - ※ 단, 사업 요약보고서는 제출함
- 제주계정 사업 중 특별행정기관 위임사무 관련 사업과 광역계정 사업 중 지역발전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관련 기관 지원 등 평가 실익이 낮은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함

4. 평가단위

- 지역·제주계정은 내역사업 단위 및 포괄보조금을 평가단위로 함
 - 내역사업 : 18개+4개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 단위로 시·도 및 시·군·구 상대 평가
 - ※ 시·도 자율편성(18개 포괄보조사업), 시·군·구 자율편성(4개 포괄보조사업)
 - 포괄보조금 : 시·도 단위의 포괄보조금의 종합운영실태 평가
 - ※ 시·군·구 단위의 포괄보조금은 제외됨
- 광역·제주 계정은 세부사업 단위로 하되, 사업별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대상 사업을 탄력적으로 조정함
 - ‘지역전략산업육성(R&D)(지식경제부)’ 등 패키지형 사업의 경우, 내역사업 기준으로 평가하되 필요시 통합 평가를 추진함(‘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지식경제부)’의 R&D 및 비R&D 사업 등 통합평가)
 - 공정중심SOC 사업군에 해당하는 사업은 단위사업 기준으로 평가를 추진함(2011년도는 세부사업 단위로 평가)
 -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에 따라 부처 통합 평가를 추진함(‘2단계산학협력중심대학,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육성(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 중심대학(지식경제부)’ 등 부처 통합평가)

5. 평가등급

- 5단계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강제로 부여함
 - S(10% 이하), A(15% 이하), B(50% 내외), C(15% 이상), D(10% 이상)
 - 평가효과성 강화를 위해 2011년 평가부터 S등급 및 D등급 사업 비율을 확대(5 → 10%)하여 운영함(2010년 평가 : S(5%), A(15%), B(60%), C(15%), D(5%))
- 지역계정
 - 지역사업은 부처 자체평가 단계부터 강제 등급화를 하며, 평가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광역발전위원회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부처 평가 단계에서 5단계 평가등급을 부여함
 - ▶ 포괄보조금 : 지역발전위원회에서만 평가하며 등급 미부여, 우수사례 선정
 - 광역계정은 지역발전위원회 종합평가 단계에서 사업군 내 평가대상 사업간 강제 등급화를 실시함
 - 제주계정은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경우 지역계정, 부처 편성사업의 경우 광역계정과 동일하게 처리함

6. 평가방법 및 절차

- 광역발전위원회 자체평가
 -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평가자료 취합, 평가 실시, 평가결과 제출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며, 지역·제주계정은 시·도지사 의견 청취 후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됨
 - ※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및 제출평가자료 확인(REDIS), 자체평가 실시, 평가의견 제출(광역발전위원회 → REDIS)
 - ▶ (광역·제주계정) 광역경제권사업(선도산업·인재양성·연계협력)에 한정하여 자체평가 실시
 - ※ 5+2 권역별 평가자료 제출(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 → REDIS), 평가자료 제공(REDIS → 광역발전위원회) 및 광역발전위원회 검토의견 작성·제출(광역발전위원회 → 지역발전위원회)

- 부처 자체평가

- (지역·제주계정) 광역발전위원회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내역사업 단위로 5단계 평가등급을 부여함

- ※ 지역발전위원회 제공 양식에 따라 평가의견 및 평가등급 제출(REDIS 및 지역발전위원회)

- (광역·제주계정) 지역발전위원회 제시 양식에 따라 평가자료 작성 및 검토의견을 첨부함(평가등급은 제시하지 않음)

- 지역발전위원회 종합평가

- 광역발전위원회 및 부처의 자체평가와 추진 실적, 성과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종합평가를 실시함

- (지역·제주계정) 「내역사업 평가」, 「포괄보조금 종합운영실태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을 추진하는데, 내역사업 평가는 광역발전위원회·부처의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 및 시·군·구별 내역사업의 평가등급을 확정함(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기능별 내역사업 단위의 시·군·구 상대평가. 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자체 ‘유형별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함)

- ※ 우수사업, 부진사업 등에 대해 발표평가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을 추진함

- ▶ 포괄보조금 평가 : 시·도가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16개 시·도의 포괄보조금 종합운영실태를 점검함

- ※ 시·도의 포괄보조금 종합운영실태 보고서는 지역발전위원회로 직접 제출함

- ▶ 우수사례 발굴 :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시·도와 시·군·구간 연계·협력사업, 복합시설 등 예산 효율화, 추진체계 개선 등 사례 발굴

- ※ 우수 연계·협력사업의 경우, 우수사례 우선 선정

- (광역·제주계정) 부처 및 광역발전위원회의 자체평가를 기초로 평가 등급화,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함

- ※ 부처단위의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중점정책방향 및 주요 실적에 대한 의견 제시 기회 제공 및 평가자료로 활용

7. 평가기준 및 지표

가. 지역·제주계정

- 내역사업의 배점기준과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음
 - 배점기준은 계속사업의 경우 기획(20), 집행(40), 성과(40), 최종사업은 집행(40), 성과(60) 등으로 구성됨
 - 평가항목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전략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추진과정의 효율성, 사업목적의 달성도, 사업의 파급효과 등으로 구성되며, 아래의 평가지표 등을 활용함
 - ▶ 지역발전시행계획, 시도발전계획, 기초생활권발전 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되어 있는가?
 - ▶ 지역내 다른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통합되어 있는가?
 - ▶ (시·군·구 자율편성) 기능별내역사업의 경우 세부 추진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예산배분 등은 적정한가?
 - ▶ 환류를 통해 문제를 사전예방 또는 해결하여 실적이 개선되었거나, 차년도 개선계획 등을 마련하였는가?
 -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 연계협력 등의 성과가 있는가?
 - ▶ 사업목표 달성을 통해 해당 포괄보조사업의 목표달성과 지역활력 증진, 지역경제활성화 등 정책목표의 실현에 기여하였는가?
- 포괄보조금은 16개 시도별 포괄보조금 전반에 대한 추진 실적(종합운영실태)을 평가하게 됨
 - 추진현황(60), 추진성과(20), 향후계획(20)

나. 광역·제주계정

- 배점기준과 평가항목은 지역·제주계정과 기본적으로 동일함
 - 사업성과 부문에 성과계량지표(20점) 평가를 포함하는데, 지표의 사업대표성 및 연계성, 목표설정의 적정성, 목표달성도로 구성됨

8.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지역·제주계정

- 내역사업 7개 분과 및 포괄보조금 1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되며, 특히 내역사업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포괄보조금은 내역사업 분과와 별도 일정으로 구성 및 운영함

나. 광역·제주계정

- 사업평가 6개 분과 및 특별평가(성과계량지표) 분과 위원회는 사업평가와 성과계량지표 평가는 이원화 후 상호 연계를 강조하고 있음
 - ※ 성과계량지표 평가는 각 사업평가 분과위원(2인)이 참여하여 평가를 시행 후 해당 점수를 사업평가에 반영함. 또한, 부문별 시행계획 및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사업군 및 평가대상 사업을 분류하는데, 6개 정책분야 분과, 12개 정책지원수단 사업군으로 구분하고 유사 목적 사업끼리 분류함

9. 평가결과의 활용

- 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데, 종합평가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는 차등 지원(「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42조)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재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기획재정부 협조)하고 있음
 - ※ 2013년 예산편성 시 평가결과 및 우수사례 도출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재원 배분

[표 7] 연도별 평가 인센티브 규모

[단위: 억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인센티브 예산	150	150	300	400	500

- 부진사업은 전년 대비 10% 이상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신청(5월말) 및 부처 예산요구(6월말) 단계부터 부처·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함(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명시)
- 우수사례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처 장관 표창 추진(부처 협조)
- 여타 평가체계와 중복 방지 및 평가결과 상충을 예방함
 - 상호 역할분담으로 중복평가를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지역·제주계정은 지역발전위원회만 평가(2011년부터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체)하고, 광역·제주계정은 기획재정부(재정사업자율평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연구개발사업평가)와 평가대상을 사전협의 및 평가결과를 공유함

10. 2011년도 평가결과

가. 잘된 점

- 5+2 광역경제권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음
 - 시·도간 연계협력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지식경제부)’ 신규 도입 등으로 5+2 광역경제권 기반의 지역발전정책 프로그램이 다양화됨
- 지역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음
 -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을 통해 시·도별 재원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부 사업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재정자율성을 제고함

나. 보완할 점

- 사업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야 함
 - R&D사업과 비R&D사업간, 인프라 구축사업과 인프라 활용 사업간, S/W사업과 SOC사업간 연계가 대체적으로 미흡하였음
- 유사·중복 사업 조정이 필요함
 - 지역사업간 유사·중복사업이 있어, 사업간 통폐합, 차별화 및 상호보완이 요구됨

- 포괄보조금 제도의 추가적 보완이 필요함

- 포괄보조사업에 대해 중앙부처가 실질적으로 자원배분을 주도하여 시·도의 자율성을 저해한 부분이 있었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획, 추진, 성과관리 등 체계적인 운영이 미흡하였음

11. 2012년도 평가일정(안)

- 평가계획 통지 : 2011. 11. 29
 - 평가계획 설명회 : 2011. 11. 22~12. 1
- 광역·제주계정 평가
 - 예비평가 : 2012. 2. 7~8
 - 현장실태조사 : 2012. 2. 16~24
 - 본평가 : 2012. 3. 6~9
- 지역·제주계정 평가
 - 광역발전위원회 자체평가 : 2012. 1. 9~31
 - 부처 자체평가 : 2012. 2. 1~22
 - 예비평가 : 2012. 2. 28~29
 - 현장실태조사 : 2012. 3. 8~21
 - 본평가 : 2012. 3. 27~30
- 평가결과 통보 : 2012. 5월초

12.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 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서면평가 위주이므로 평가자 입장에서 상세한 내용을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목표, 사업집행, 사업관리 및 성과 등 체계적인 작성이 필요함

-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전년도 평가와의 차이나 변경 사항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 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성과부문 평가의 비중이 크므로, 사업성과 작성에 있어 Input 혹은 Process 요소가 아닌, Output, Outcome 요소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체평가 결과와 평가자료를 토대로 종합평가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광역발전위원회와 부처의 자체평가지 적절한 대응도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포괄보조금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어 평가 과정에서 우수사례 발굴이 함께 이루어짐. 따라서 우수사례 발굴을 염두에 두고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 2012년 평가에서는, 2011년 신규사업과 광역계정 사업 중 전년도 지역발전위원회 종합평가 S등급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을 파악하고 있어야 함(지역계정의 경우 내역사업개편 등에 따라 신규사업 구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전략

- 지역발전정책에 부합하는 지역내 일자리 창출, 삶의 질 제고, 연계협력 성과 등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 당초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계획했던 성과목표 대비 달성 정도를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간 점검 및 확인 과정을 거침으로써 목표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
- 평가단위는 내역사업의 경우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준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 수준보다 우수한 평가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이 필요함
- 포괄보조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기획, 실행, 관리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내 합리적 체계가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일반국고보조금, 자체재원 등으로 시행되는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성과 제고 노력도 중요함
- R&D사업과 비R&D사업간, 인프라 구축사업과 인프라 활용 사업간, S/W사업과 SOC사업간 연계 등에 대한 전략 및 파급효과 확대방안 등을 사업기획 및 실행 단계에서부터 검토·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간 유사·중복 사업 조정이 필요한데, 사업발굴 단계부터 사업간 통폐합, 차별화 및 상호보완을 통해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2011

- 통권 451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
- 통권 452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공급 다원화 전략
- 통권 453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 강화 전략
- 통권 454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 통권 455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
- 통권 456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전략
- 연구총서 지방세계의 선진화 -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통권 457)

2010

- 통권 444 2020년 지방자치제도 발전모형
- 통권 445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
- 통권 446 성과창출형 지방정부 시스템 구축
- 통권 447 2020 지방재정 그랜드 디자인
- 통권 448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세계 개편
- 통권 449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 연구총서 녹색성장과 지역특화발전
(통권 450)

2009

- 통권 428 지방자치법의 기능적 한계 극복방안: 지방자치법 60주년의 회고와 과제
- 통권 429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인력 통합에 관한 연구
- 통권 430 지역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연구
- 통권 431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발전방안
- 통권 432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운영실태 및 효과성 분석
- 통권 433 유비쿼터스 기반의 재난관리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를 중심으로
- 통권 434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질서 확립방안: 주차질서를 중심으로
- 통권 435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책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례연구
- 통권 436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조직성과 및 행정발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통권 437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 통권 438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의 생산성 제고방안
- 통권 439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할 강화 방안
- 통권 440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 추진전략
- 통권 441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자산 측정 및 관리 방안
- 통권 442 저탄소녹색성장의 지역경제발전효과 추정 및 극대화 방안
- 연구총서 재정분권과 지방소비·소득세
(통권 44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서초동) TEL. 02-3488-7372 FAX. 02-3488-7309

